

주민세(재산분) 신고납부 안내문

서울특별시 지방세정 발전에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, 귀 사업장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.

매년 7월은 주민세(재산분) 신고·납부의 달로 사업소를 운영하는 사업주는 건축물 소유 여부와 관계없이 기한 내에 주민세(재산분)를 신고·납부하여야 합니다.

- ☐ 납세의무자 : 7월 1일 현재 개인 및 법인 사업주
- ☐ 과세 대상 : 연면적이 330㎡를 초과하는 사업소용 건축물
- ☐ 과세 표준 : 전용면적+공용면적(건물 내 주차장, 복도 등의 안분면적)
※기계장치 또는 저장시설만 있는 경우에는 수평투영면적
- ☐ 세 율 : 1㎡당 250원 (오염물질 배출사업소인 경우 500원)
- ☐ 신고·납부 기간 : 7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
- ☐ 신고·납부 방법
 1. 인터넷 : 이택스(<http://etax.seoul.go.kr>) 또는 wetax를 이용 신고·납부
 2. 수기 신고·납부
 - 신고서를 작성하여 구청 세무과에 제출 (우편 및 팩스 제출 가능)
 - 납부서를 작성하여 서울시 소재 은행, 우체국에 방문하여 납부
(서울 이외 지역인 경우: 신한은행, 우리은행, 우체국만 가능)

아울러 위 기간 내에 주민세(재산분)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무신고가산세 20%를,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납부불성실가산세 (세액×지연일수×1십만분의 25)를 부담하셔야 하므로 기한 내에 꼭 신고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을 경우 사업소 소재지 관할 구청 세무과로 문의주시면 친절히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.

2020. 7. .

서울특별시장